

##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76호  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 480호  
일부개정 2023. 7. 14 규칙 제1111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〈개정 2005. 10. 5, 2023. 7. 14〉

제2조(사용신청시 제출서류)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 
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행사계획서
2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검사필증 및 관련등록증

제3조(사용허가) ①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 
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사용자에게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의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  
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 
대장을 비치, 정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감면적용범위)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복지회관 사용  
에 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  
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1. 전부감면

가. 시가 주최하는 국경일행사 또는 일반 행사

나.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  
다.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
정되는 사항

라.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사항

마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의 임대료

2. 일부감면(50퍼센트)

가.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

나. 일반단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, 행사, 공연, 전시회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 삭제 <2023. 7. 14>

제6조(설비 또는 기기관리) 시장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장비치)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80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4 규칙 제111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3. 7. 14>

##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서

주 소 :

성 명 :

허가사항 :

1. 허가건물(시설)표시
2. 허가기간

년	월	일부터	오전( )
		일간	오후( )
년	월	일부터	야간( )

사용요금 :

허가조건

1. 「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기타 관계법규 지시사항을 준수한다.
2.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3. 노동복지회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 허가함.

년 월 일

용인시장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###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

결 재		허가 번호	허가 일시	시설명	사 용 자		사용 면적	집회 인원	특별 부대 설비 개요	요금	비고
관장	담당				주 소	성명					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23. 7. 14>

[별지 제4호서식]

### 노동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접수대장

결 재		접 수		시설명	신 청 인		사용 일시	사용 목적	특별 대비 개요	사용료	비고
관장	담당	번호	일자		주 소	성명					